

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4. 5. 8 선고 2024가단166 판결 [건물명도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8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,
나. 2023. 7. 19.부터 위 가.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월 90만원의 비율에 의한돈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'청구원인'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무변론 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)

판사 신혁재

별지